김제 검산 예다음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김제시 거주자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4.25.(목)	2024.05.07.(화)	2024.05.08.(수)	2024.05.09.(목)	2024.05.17.(금)	2024.05.23.(목)~ 2024.05.25.(토)	2024.05.28.(화)~ 2024.05.30.(목)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김제시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김제검산예다음.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O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구매금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1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4.25.(목)**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5.07.(화)	2024.05.08.(수)	2024.05.09.(목)	2024.05.17.(금)	2024.05.23.(목)~ 2024.05.25.(토)	2024.05.28.(화)~ 2024.05.30.(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김제 검산 예다음 견본주택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동 505-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2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시 건축과 - 제13764호(2024.04.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동 510-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9층, 9개동, 총648세대**
[특별공급 244세대(기관추천 43세대, 다자녀가구 65세대, 신혼부부 78세대, 노부모부양 19세대, 생애최초 3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4000159	01	084.4636A	84A	84.4636	24.4389	108.9025	63.1563	172.0588	44.1254	**308**	**31**	**31**	**55**	**9**	**28**	**154**	**154**	**-**
		02	084.9925B	84B	84.9925	25.1184	110.1109	63.5517	173.6626	44.4017	**126**	**12**	**12**	**23**	**3**	**11**	**61**	**65**	**-**
		03	096.7936A	96A	96.7936	27.0660	123.8596	72.3758	196.2354	50.5669	**45**	**-**	**5**	**-**	**1**	**-**	**6**	**39**	**15**
		04	096.7525B	96B	96.7525	27.6241	124.3766	72.3452	196.7218	50.5454	**21**	**-**	**2**	**-**	**1**	**-**	**3**	**18**	**7**
		05	106.8963A	106A	106.8963	30.5667	137.4630	79.9300	217.3930	55.8447	**90**	**-**	**9**	**-**	**3**	**-**	**12**	**78**	**4**
		06	106.9778B	106B	106.9778	30.8810	137.8588	79.9910	217.8498	55.8873	**58**	**-**	**6**	**-**	**2**	**-**	**8**	**50**	**2**
	합 계										**648**	**43**	**65**	**78**	**19**	**39**	**244**	**404**	**28**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람.
- 주택형은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 제작물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 (청약시 주택형)	084.4636A	084.9925B	096.7936A	096.7525B	106.8963A	106.9778B
약식표기 주택형	84A	84B	96A	96B	106A	106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계약시	2024-06-28	2024-10-28	2025-05-28	2025-12-28	2026-07-28	입주시
84A	308	101동,102동,103동 104동,105동,106동	4~9층	82	88,925,200	256,074,800	-	345,000,000	10,000,000	24,500,000	51,750,000	51,750,000	51,750,000	51,750,000	103,500,000
			10층이상	204	88,925,200	262,074,800	-	351,000,000	10,000,000	25,10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105,300,000
		107동	4~9층	12	88,925,200	245,074,800	-	334,000,000	10,000,000	23,4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50,100,000	100,200,000
			10층이상	10	88,925,200	251,074,800	-	340,000,000	10,000,000	24,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02,000,000
84B	126	101동,102동,103동 104동,105동,106동	4~9층	36	89,482,000	247,518,000	-	337,000,000	10,000,000	23,70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50,550,000	101,100,000
			10층이상	80	89,482,000	253,518,000	-	343,000,000	10,000,000	24,300,000	51,450,000	51,450,000	51,450,000	51,450,000	102,900,000
		107동	4~9층	6	89,482,000	236,518,000	-	326,000,000	10,000,000	22,6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48,900,000	97,800,000
			10층이상	4	89,482,000	242,518,000	-	332,000,000	10,000,000	23,2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99,600,000
96A	45	101동,102동,103동 104동,105동,106동	1~3층	39	101,906,700	226,448,455	22,644,845	351,000,000	10,000,000	25,10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105,300,000
		107동	1~3층	6	101,906,700	216,448,455	21,644,845	340,000,000	10,000,000	24,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51,000,000	102,000,000
96B	21	101동,102동,103동 104동,105동,106동	1~3층	18	101,863,300	219,215,182	21,921,518	343,000,000	10,000,000	24,300,000	51,450,000	51,450,000	51,450,000	51,450,000	102,900,000
		107동	1~3층	3	101,863,300	209,215,182	20,921,518	332,000,000	10,000,000	23,2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99,600,000
106A	90	108동,109동	1층	3	112,542,900	276,779,182	27,677,918	417,000,000	10,000,000	31,700,000	62,550,000	62,550,000	62,550,000	62,550,000	125,100,000
			2층	3	112,542,900	283,142,818	28,314,282	424,000,000	10,000,000	32,4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63,600,000	127,200,000
			3층	4	112,542,900	289,506,455	28,950,645	431,000,000	10,000,000	33,100,000	64,650,000	64,650,000	64,650,000	64,650,000	129,300,000
			4층	4	112,542,900	295,870,091	29,587,009	438,000,000	10,000,000	33,8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65,700,000	131,400,000
			5~9층	20	112,542,900	302,233,727	30,223,373	445,000,000	10,000,000	34,500,000	66,750,000	66,750,000	66,750,000	66,750,000	133,500,000
			10층이상	56	112,542,900	307,688,273	30,768,827	451,000,000	10,000,000	35,100,000	67,650,000	67,650,000	67,650,000	67,650,000	135,30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계약시	2024-06-28	2024-10-28	2025-05-28	2025-12-28	2026-07-28	입주시
106B	58	108동	1층	2	112,628,800	264,882,909	26,488,291	404,000,000	10,000,000	30,4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60,600,000	121,200,000
			2층	2	112,628,800	271,246,545	27,124,655	411,000,000	10,000,000	31,100,000	61,650,000	61,650,000	61,650,000	61,650,000	123,300,000
			3층	2	112,628,800	277,610,182	27,761,018	418,000,000	10,000,000	31,8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125,400,000
			4층	2	112,628,800	283,973,818	28,397,382	425,000,000	10,000,000	32,500,000	63,750,000	63,750,000	63,750,000	63,750,000	127,500,000
			5~9층	10	112,628,800	290,519,273	29,051,927	432,200,000	10,000,000	33,220,000	64,830,000	64,830,000	64,830,000	64,830,000	129,660,000
			10층이상	40	112,628,800	295,973,818	29,597,382	438,200,000	10,000,000	33,820,000	65,730,000	65,730,000	65,730,000	65,730,000	131,460,000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임.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실행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96A	96B	106A	106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7	2	-	-	-	-	9
	장기복무 제대군인	5	2	-	-	-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6	2	-	-	-	-	8
	중소기업 근로자	6	3	-	-	-	-	9
	장애인	7	3	-	-	-	-	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1	12	5	2	9	6	65
신혼부부 특별공급		55	23	-	-	-	-	7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3	1	1	3	2	19
생애최초 특별공급		28	11	-	-	-	-	39
합 계		154	61	6	3	12	8	244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유의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td></tr>
<tr><td>청약통장
자격요건</td><td>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td></tr>
</table>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제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3-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전북특별자치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3-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7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김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4.2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3-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3-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39세대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금번 공급예정인 주택형 중 전용60㎡ 이하는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불가)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tr><th>단계</th><th>소득구분</th><th colspan="2">내용</th></tr>
<tr><td>1단계</td><td>신생아 우선공급
(1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2단계</td><td>신생아 일반공급
(5%)</td><td colspan="2">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3단계</td><td>우선공급
(3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tr>
<tr><td>4단계</td><td>일반공급
(15%)</td><td colspan="2">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tr>
<tr><td rowspan="2">5단계</td><td rowspan="2">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r><td>1인 가구</td><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tr>
</table>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td></tr>
</table>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4.25.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3">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4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제시에 거주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제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84A / 84B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96A / 96B / 106A / 106B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5 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5.17.(금) ~ 2024.05.26(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5.17.(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비 고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4.05.23.(목) ~ 2024.05.25.(토) 10:00 ~ 16:00	김제 검산 예다음 견본주택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동 505-2번지)	

■ **공통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4.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 2024.04.25.(목)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모든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추가서류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모든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불가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증록증 또는 운전명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도장)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25.(목)**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 2024.04.25.(목)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4.04.25.]
추가서류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미성년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한부모 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 가족으로 정하여 5년이 경과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 연락처,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직인 날인)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복무확인서	해당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인 경우)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신부임 입증 서류 하단 표 참조)
대리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접수 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불가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증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도장)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25.(목)**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 2024.04.25.(목)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모든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4.04.2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전체선택 발급(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추첨제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은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출력이 불가하므로 본인 및 세대원의 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 내방하여 증빙
		등기사항전부	본인 및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명서	세대원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하 국토교통부"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주택 공시가격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 토지 :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불가한 경우 재산세 납부내역(정부24 또는 인근 주민센터)과 상기 해당하는 공시가격 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모든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 연락처,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직인 날인)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복무확인서		해당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인 경우)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신부임 입증 서류 하단 표 참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불가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증록증 또는 운전명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도장)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25.(목)**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 2024.04.25.(목)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모든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4.04.25.]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비연속적인 5개년도 소득세납부사실도 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전체선택 발급(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청약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추가서류 (해당자)	추첨제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은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출력이 불가하므로 본인 및 세대원의 인증서 지참 후 견본주택 내방하여 증빙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하 국토교통부"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주택 공시가격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 토지 :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불가한 경우 재산세 납부내역(정부24 또는 인근 주민센터)과 상기 해당하는 공시가격 증명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모든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 연락처, 의료기관등록번호, 출산예정일, 의료기관 직인 날인)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 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복무확인서	해당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인 경우)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신부임 입증 서류 하단 표 참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불가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증록증 또는 운전명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도장)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25.(목)**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 2024.04.25.(목)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모든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4.04.25.]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출입국 사실증명서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4.04.25.]
추가서류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서		•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4.04.25.]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 체류 중이면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복무확인서	**해당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인 경우)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신부임 입증 서류 하단 표 참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불가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증록증 또는 운전명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도장)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25.(목)**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서류 외 추가제출 필수)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자녀)국내 거주 확인을 위하여 제출 •출입국 사실이 있다면"Y", 없다면"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기록대조일 [출생일~2024.04.25.]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셔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안내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되지 않을 경우 →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개인정보 삭제)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공고일 이전 가입 필수)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국민연금 가입일 확인용)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원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재무제표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세무서 - 등기소 -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발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의 소득금액(과세대상 금액) 혹은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해당년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위촉증명서(직인날인)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택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 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입증서류	-세무서 -해당직장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출산휴가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명시 필수)	-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보험센터 등 - 해당직장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은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신청이 제한되어 부적격처리 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의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안내**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건강보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공단)
	근로자,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아래 ①~④ 중 해당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④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	•세무서 •해당직장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② 행정복지센터 ③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점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 2024.04.25.(목) 이후 "상세"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구분	해당서류	대상	서류제출 시 발급 유의사항
필수서류	**신분증**	**본인**	• 내국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같이 제출) •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본인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 신청자와의 관계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발급)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모든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본인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 기록대조일[출생일 ~ 2024.04.25.]
추가서류 (해당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했으나, 청약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점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2024.04.25.]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과거 주소변동사항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출입국사실증명서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출입국사실이 있다면 "Y", 없다면 "N",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2024.04.25.]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표시 발급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당첨사실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복무확인서	해당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
	기타서류	-	• 적격확인을 위해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단신부임인 경우)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7항에 따라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신부임 입증 서류 하단 표 참조)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접수불가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증록증 또는 운전명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의 인장(도장)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해당 서류제출 기한 내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4.25.(목)**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 및 일자"가 표기**되도록(모든 정보가 표시되도록 발급)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제출서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구분	해당자격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서	본인 또는 세대원	• 해당 임차주택, 사본 제출	-전세피해자 낙찰주택(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자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 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낙찰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경매) 또는 매각결정통지서(공매)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 해당 임차주택, 원본 제출	
	채권자 확인서류		• 낙찰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①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②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 :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7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5.28(화) ~ 2024.05.30(목) (3일간, 10:00~16:00)	김제 검산 예다음 견본주택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동 505-2번지)	063)547-3300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수납 불가]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678929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
(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101호 : '1011101홍길동')
※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 체결 시 분양대금 입금 확인증 지참 요망.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특약사항

① 코리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④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⑤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⑥ 분양대금 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 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① 사업주체의 PF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자금관리자인 코리아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매수인("수분양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매수인("수분양자")의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 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청약신청자)	•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은 대리불가)
	○		위임장		•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청약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 계약체결 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한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2)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에 60%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임.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관련 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당사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알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 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당사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시 당사는 대출을 알선 하지 않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알선은 확정이 아니며, 중도금대출이 알선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자력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8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금 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84A	15,000,000	1,500,000	13,500,000	
84B	13,000,000	1,300,000	11,700,000	
96A	15,000,000	1,500,000	13,500,000	
96B	13,000,000	1,300,000	11,700,000	
106A	17,000,000	1,700,000	15,300,000	
106B	17,000,000	1,700,000	15,3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678941**	**코리아신탁(주)**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에 따라 위 납부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일정 및 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301홍길동)**
- 위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제46조제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발코니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 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내실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 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발코니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발코니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대피시설에는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의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발코니 확장 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 LG)**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설치대수	설치위치	옵션금액		비고
			일반형	공기청정형	

84(A,B) 96(A,B)	2대	거실,침실1	4,100,000	4,700,000	
	3대	거실,침실1,침실2	5,700,000	6,400,000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800,000	7,800,000	
106(A,B)	3대	거실,주방,침실1	5,900,000	6,500,000	
	4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	7,200,000	7,900,000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100,000	9,100,000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립세대 해당)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천정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 ·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거실, 안방 각 1개소)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시스템 에어컨 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 기능이 없습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정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품목	세부내역	84A,96A	84B,96B	106A	106B	비 고
가구 및 인테리어	주방	사각싱크볼	대형 사각싱크볼(950) + 고급수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 옵션 미선택시 일반싱크볼 및 일반수전 시공
		주방상판	고급 엔지니어드스톤(벽체,상판)	4,200,000	3,400,000	4,200,000	4,200,000	※ 옵션 미선택시 일반주방타일, 인조대리석 시공
		고급주방장식장	유리도어 + 간접조명	2,000,000	-	-	-	※ 옵션 미선택시 기본벽체 및 도배 시공
	현관	중문	3연동 슬라이딩 중문	1,400,000	1,400,000	1,400,000	1,400,000	※ 옵션 미선택시 중문 미시공
	안방	드레스룸[고급형]	벽부형 고급선반+벽판넬+유리도어	2,000,000	1,700,000	2,100,000	2,100,000	※ 옵션 미선택시 일반시스템선반/도배/일반가구도어 시공
		알파룸[일반형]	시스템선반+가구도어	-	-	1,000,000	-	※ 옵션 미선택시 일반 알파룸(공실)로 시공
		알파룸[고급형]	벽부형 고급선반+벽판넬+유리도어	-	-	3,400,000	-	※ 옵션 미선택시 일반 알파룸(공실)로 시공
		슬라이딩 도어	고급유리 도어	-	-	1,000,000	-	※ 옵션 미선택시 드레스룸/알파룸 출입구 도어 미시공
	침실	매립형 붙박이장	침실2,3 붙박이장	2,000,000	2,000,000	2,200,000	2,200,000	※ 옵션 미선택시 기본벽체 및 도배 시공
가전	욕실	복합환풍기 2대	제습, 온도조절, 난방(부부, 공용)	900,000	900,000	900,000	900,000	※ 옵션 미선택시 일반 환풍기 설치
	드레스룸	제습기 1대	천정형 제습기	850,000	850,000	850,000	850,000	※ 옵션 미선택시 드레스룸 제습기 미설치
	주방	빌트인 냉장고	냉장고+김치냉장고+빌트인냉장고장 LG전자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 옵션 미선택시 일반냉장고장 설치
		인덕션	LG전자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 옵션 미선택시 가스쿡탑 설치
		식기세척기	LG전자	1,350,000	1,350,000	1,350,000	1,350,000	※ 옵션 미선택시 일반가구장 시공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형별 개별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패키지 옵션형으로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추가선택품목 계약 불가)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립세대 해당)
- 발코니 비확장시 주방 상판은 MMA, 주방 벽부는 타일, 일반형 싱크볼, 일반 수전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내부 조명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유무에 따라 일부 콘센트, 스위치 및 조명기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고급형] 미선택시 일반형 시스템선반 및 가구도어가 시공되며, 벽체는 도배마감됩니다.
- 사각싱크볼 미선택시 일반싱크볼로 시공되며 제품 사이즈가 다르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E스톤(벽체, 상판) 미선택시 주방상판은 MMA, 주방 벽부는 타일이 시공됩니다.
- 주방 E스톤(벽체, 상판)+사각싱크볼 선택시 고급형 주방수전이 설치되며 미선택시 일반형 주방수전이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파룸 옵션(일반형, 고급형)은 106A타입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106A타입 알파룸, 드레스룸 옵션 (일반형, 고급형) 선택시 슬라이딩 도어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딩 도어 옵션 선택시 기존 드레스룸 및 알파룸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도어의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6A타입 슬라이딩 도어 옵션 미 선택시 알파룸 및 드레스룸에는 기본형(일반도어)도어, 옵션형(유리도어)도어로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2,3 매립형 붙박이장 미선택시 경량벽체 및 일반도배로 시공되며 도어와 벽체 사이의 간격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공용욕실 복합환풍기 선택시 기본 환풍기는 설치되지 않으며, 기본환풍기 설치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옵션 미선택시 중문은 미시공되며, 신발장 측면에 경량벽체가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빌트인 냉장고 미선택시 냉장고장의 디자인이 다르게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 미선택시 기본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시 기본 하부장이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 96A타입 주방장식장 미선택시 날개벽은 설치되지 않으며 기존 벽체는 일반도배로 시공되며 벽체 간격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개별 가전제품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패키지 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구 분	항 목	84A, 96A	84B, 96B	106A	106B	비 고
드레스룸 패키지	드레스룸[고급형] + 알파룸[고급형] + 슬라이딩도어	-	-	5,500,000	-	슬라이딩 도어 설치에 따른 드레스룸, 알파룸 유리도어 미시공
주방특화 패키지	고급 엔지니어드스톤(벽체, 상판) + 사각싱크볼 + 고급수전	4,400,000	3,600,000	4,400,000	4,400,000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시 계약 가능하며, 품목별 선택 계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립세대 해당)
- 발코니 비확장시 해당 주택형의 드레스룸(화장대 포함)은 미시공되며 벽면마감은 벽지로 시공됩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일정

계약금	잔금	은행명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시	입주시			
10%	90%	광주은행	1107-021-678907	코리아신탁(주)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에 따라 위 납부계좌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일정 및 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301홍길동)**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별도계약품목)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당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전까지 2일이상 사전 점검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표 제출 → ⑥ 입주전 보수 → ⑦ 보수사항 여부 확인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

■ **입주예정일 : 2027년 3월중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를 통해 앞당길 수 있으며 납기일이 미도래한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전방문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구 공사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입주 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날짜를 지정·통보할 예정이며, 사전방문일자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할 경우 실입주일 또는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 및 제세공과금(재산세 등) 등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실입주일 또는 입주증발급일 중 빠른날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는 잔금완납후 가능하며 이 경우 인테리어공사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고, 인테리어 공사 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 및 비용(계약금, 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계약금, 중도금 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영수증 등) "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된 관리주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태만으로 인한 문제(동파, 결로, 분실, 도난, 파손)는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10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 아래 주요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공통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주의문구의 명시)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주소체계에도 공동주택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본 단지의 대지는 주거와 비주거 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대지분할 및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 지연 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 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얻었으므로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용됩니다. • 개별 인테리어 공사 등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계약자가 계약금, 중도금대출 상환 또는 계약금, 중도금대출 대환처리 및 잔여 미납금 모두 완납 후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추후 설계 변경된 부분을 하자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 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 등 외부 시설물 등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당사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성능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필히 서면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자는 본 주택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동법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사업승인시 해당관청에 제출한 총사업비 규모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주체가 예상하는 총사업비 규모를 예상하는 금액이며, 입주자모집공고상의 금액은 당사가 사업승인권자로부터 "분양가 승인"를 받은 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당초 사업비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옹벽, 담장,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난간 등의 형태, 높이,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심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해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 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분양계약서,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 및 단지외부여건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시계획은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동측 10m도로, 서측 풍요로35m도로, 남측 20m도로, 북측 콩쥐팥쥐로 35m도로가 인접하여 있으며,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서측 외부에 경관녹지 및 완충녹지 구간에 보행자 산책로와 농업용 수로가 있으며, 이는 본 단지와 관계없는 지자체 관리구간으로 이용자의 성향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농업용 수로로 인한 여름철 벌레 등의 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인접 동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 동배치 형태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 분양계약 면적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실제 공사 시 외부마감에 따라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타입의 세대중 동 조합에 따라 창호 형태 및 크기 및 다용도실 내부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상 및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전기 배선기구 및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및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제공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방 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 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정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 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은 캡(플러그)마감되며, 별도로 가스기기와의 연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스기기(가스렌지 등)와 도시가스배관의 연결(별도 수수료 발생)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서비스지역 고객센터로 별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가스쿡탑 설치시 가스차단기, 전기쿡탑 설치시 전기차단기, 전기+가스쿡탑제품(하이브리드) 설치시(가스,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쿡탑 옵션가격은 옵션 선택시, 기본제품 사양에서 미설치되는 품목에 대해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안방 이외의 실에 에어컨 설치 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배관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화장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의 크기와 설치 위치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하향식 피난기구 위치는 타입별, 층별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저층세대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 아트월, 주방, 화장실 등 타일 시공 시 줄눈 및 나누기도는 시공과정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출입문에는 소방성능 제연설비 테스트를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며, 이는 각 층별 1개소로 좌,우 세대별 1세대만 설치됨을 인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인테리어 도면의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은 다양한 두께로 인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한 안목치수가 도면 침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실사용 공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출입문 포함 각종 철재문에 도어 스토퍼(말굽)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별도의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상1,2층 및 최상층은 세대 내 방범을 위하여 창문 개소마다 동체감지기가 설치되며, 그 외 기준층은 거실에만 동체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확장 시 인접 세대의 확장 유무에 따라 단열재 설치에 따른 이형 벽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발코니 외부창호는 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로 나가는 문에는 일반 슬라이딩 이중창이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내부 벽체 재질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가 일반 스탠딩형 냉장고 설치 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다소 돌출되어 주방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목창호 문틀 및 가구 등에 타카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 본공사 시 세대 보일러는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및 본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설치 위치 및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위치, 개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크기는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욕실, 현관 등 단차 발생 부위에 시공상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바닥, 벽, 천장부분에 가구(주방, 침실, 욕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원활한 시공 진행을 위하여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 상이 등으로 천정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부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및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 후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싱크대 하부장에 온수 분배기 및 배관 설치로 실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할 수 있으며, 개폐 시 바닥이 일부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 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가 설치됩니다. 단, 건축평면 구조상 직접배기 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 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정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 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설치 및 사용 시 응축수 배수관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거실의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하부에(스탠드 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 에어컨 응축수 배관은 상부에(벽걸이 타입 에어컨 기준) 설치되므로, 에어컨 설치 방식에 따라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설비 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욕실 하부에 설비기기(급수급탕분배기)가 설치되며, 실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환기설비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됩니다. • 환기 유니트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 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에는 필터가 설치되며,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교환주기는 상이할 수 있으며, 교환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안방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배수배관으로 인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입주자가 설치한 세탁기 및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발코니 미확장 세대 포함)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한 세대 스프링클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튼박스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하여야 합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및 보일러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입주자가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최종 마감재로 가려지는 천정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세면대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기준 최종 마감재로 설치된 설비, 소방, 환기, 가스, 위생, 마감기구, 오배수 등의 부분에 대해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세대내 드레인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욕실 바닥은 본 공사시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견본주택과 높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위치와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시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해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 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샤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 위치(발코니,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천정)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내부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 덕트 노출을 가리기 위해 해당 타입 침실 커튼박스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천정에는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와 덕트가 노출 시공됩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상부세대 배수배관이 시공되어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 평형,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비확장 발코니 및 발코니 확장 구간의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되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방화문은 본 공사시 방화 성능향상 및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발코니 난간(유리, 투시형, 콘크리트 난간 등)의 높이와 샤시 설치 높이는 실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교관련	• 현재 기준으로 개발사업지의 초등학생 통학구역은 김제동초등학교이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충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김제검산초등학교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 및 통학구 내 학생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 향후 통학구역 조정 검토 예정입니다.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84B, 96A, 106A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 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상 및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음) • 견본주택 PL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PL창호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는 인허가 관청의 지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의 분양 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 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본 공사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 모델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가스 배관 위치는 본 공사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주방가구 상부장 깊이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분양홍보물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독서실, 휘트니스, 주민공동시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공급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 공동주택(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세대 외벽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동의 엘리베이터 홀은 직접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 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주차장 이용시 주동 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오수 및 쓰레기 집하장 인접 세대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설치예정 위치를 단지모형 및 카탈로그 등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이며,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본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계기는 전파측정 후 설치 위치가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층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이동통신설비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붕층 의장용 구조물, 태양광패널설비,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급배기 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색상, 디자인, 재질,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위원회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 과정에서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주변 지형 및 도로 레벨의 특성 고려하여 건축계획 되었으며, 계단 및 엘리베이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요청에 따른 민원 불가하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소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07동, 102동 인근 지상에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해당건물 지하층에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관련시설 사용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의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접 동의 해당세대는 분양계약 체결시 충분한 확인을 통한 상담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기타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전면 지하1층 선큰 주차구간 노출 및 후면 부출입구 인접으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진동, 분진, 빛의 산란 등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 101동 옥상층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됩니다. 단,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저층부 오픈 발코니 세대 일부는 단지레벨 구성에 따라 타동의 오픈 발코니 세대에 비하여 높이가 높게 보일 수 있으니 분양 계약 체결시 충분한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지하1층 PIT 구간에 재활용 보관창고 설치됩니다. • 102동 전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사용자들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저층세대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 102동 저층부 오픈 발코니 세대 일부는 필로티 구성에 따라 타동의 오픈 발코니 세대에 비하여 높이가 높게 보일 수 있으니 분양 계약 체결시 충분한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 옥상층에 옥상특화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 102동 옥상층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3동 1호라인 우측에 부출입구 및 차량 드랍존이 있어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빛의 산란 등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 103동 옥상층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됩니다. 단,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1,2호 라인 전면 지하1층 선큰 주차구간 노출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진동, 분진, 빛의 산란 등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 104동 옥상층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됩니다. 단,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5동 전면부에 주출입구 인접으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진동, 분진, 빛의 산란 등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 105동 2,3호 라인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며, 이로인한 사생활권 침해, 소음, 분진,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등의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5동 1호라인 저층(1,2층)은 지하 주차장 차량 진입에 따른 필로티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의 산란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3층 오픈 발코니 세대는 체감상 타동의 오픈 발코니 세대에 비하여 높이가 높게 보일 수 있으니 분양계약 체결시 충분한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105동 옥상층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됩니다. 단,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6동 3,4라인 전면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사용자들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저층세대 사생활 침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 106동 옥상층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7동 저층부 세대는 주변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있어 사용자들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사생활 침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 107동 옥상층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됩니다. 단,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8동 1,2호 라인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사용자들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저층세대 사생활 침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 108동 2호 라인 저층 2개층은 필로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08동 옥상층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옥상특화 조형물이 설치됩니다. 단,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8동 지하 피트층 노출 외벽에 제연설비 환기를 위한 D.A그릴 창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해당동의 세대 및 저층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9동 후면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이 있어 사용자들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09동 지하 피트층 노출 외벽에 제연설비 환기를 위한 D.A그릴 창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해당 동의 세대 및 저층 세대는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9동 옥상층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됩니다. 단,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 조형물의 형태 및 구조는 본 공사시 구조계산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 및 형태가 홍보용 그래픽 및 견본주택의 모형과 다르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장은 총 7개 장소에 설치예정이며, 설치장소는 각동 인접한 구간에 있으며, 일부동의 전면 발코니 방향에 설치된 장소로 인하여 사용자에 따른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며, 해당 동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청약자는 반드시 분리수거대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은 105동 2,3호 라인 전면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업종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소음, 진동, 냄새, 에어컨 실외기 영향 및 환기장치에 따른 사생활권 침해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해당 동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청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정차공간은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부출입구 방향에 통학차량 및 비상차량 회전을 위한 드랍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차공간은 지하2개층으로 되어 있으며, 주출입구, 부출입구을 통한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하며, 지하층 각각의 램프를 통하여 지하2층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출입구별 주변 도로에 순응하기 위한 레벨로써 일부 경사구간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불편함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차대수는 대지의 형태, 주동의 배치에 따라 각 동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체세대에 대한 평균 주차대수 지하층에 배치하는 것이므로 각 동과 인접한 주차대수가 부족

	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홍보 그래픽 및 견본주택의 단지 모형에서 보이는 오픈 주차장은 단지 레벨기준 지하1층 주차장입니다.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 주차장 출입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로부터 연결되는 지상 및 지하주차장 출입 및 지상차량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전기차충전주차, 경차주차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 주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층 또는 일부세대의 경우 입주 시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 출입구에 위치한 저층부 세대는 지상 및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보행자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및 지상 주차장의 주차 배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주차 영역을 한정할 수 없습니다. • 주동 및 부대 복리시설의 색채 및 외부마감재,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협의(경미한 변경신고)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조경특화 계획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 및 인접 대지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 쌓기, 자연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실내운동시설의 운동장비 등은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경로당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운동공간 및 단지출입구, 지상 및 지하 주차장출입구, 경비실,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등 주민 공동시설이 위치하는 곳의 저층 일부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에 따른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 출입구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의 거리는 세대별로 상이합니다. • 단지 내 설치된 놀이터, 운동시설,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법적설치 시설이나 공동사용 여부에 따라 사용검사 완료 후 입주자 회의 및 관리조약에 의해 공동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탑구조물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설계 상 이사차량(사다리차)의 진입이 불가하여 각 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재질,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도로 및 인접 대지경계에 석축 또는 옹벽이 형성될 수 있으며, 석축 또는 옹벽의 형태 및 재질, 높이 등은 실시공시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코어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단지 내 조경 식재 수종 및 식재 위치, 시설물 위치 및 종류, 수량, 포장 패턴 및 재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과정 및 현장 시공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전후면 창호,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측벽(문양 포함), 공동주택 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난간의 디테일,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DA급/배기창, 실외기실 형태, 주차장 램프 형태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 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지하 기둥 및 슬래브의 시공방식은 공사의 일정, 품질향상, 시공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구조계산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시 소음 측정에 따라 대지경계 또는 녹지의 경계 등에 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저층부 일부 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내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물 등이 발견될 시 지하구조물 및 토목 옹벽 등의 위치 및 형상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상 및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상가, 주차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생활폐기물 보관소 인접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상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배치상 일부 동의 저층 세대 및 특정 세대는 일조권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단지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령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 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 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택배 차량으로 인해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무인택배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전기차 충전 시스템은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외 보안등 및 지하/지상층 CCTV는 본공사시 기능과 감시범위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조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건축물의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보호용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또는 옥탑 층에 의장용 구조물, TV 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이동통신설비,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데크, 건축 및 토목옹벽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휘트니스, 도서관 등)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소음발생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커뮤니티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오수저류조(배기덕트 포함), 쓰레기 분리수거장, 천창(TOP LIGHT) 상가, 관리동, 선큰, 주차램프, 외부계단, 각 동 출입구 및 장식물 등의 설치로 일조권 · 조망권 ·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형태로서 고층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상 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안 및 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상 및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계/전기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외부색채, 입면(창호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 프레임 두께, 색상,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고급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주동 1층 로비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분리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석종은 특성에 따라 시공시 컬러가 일부 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사이즈의 변경으로 코어 상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고층부 세대는 승강기 기계실(제어반),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옥상에는 TV안테나 및 통신설비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벽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저층부 세대 일부 창호 폭이 줄어들거나 창호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창호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외부창은 발코니 구조나 형태에 따라 창호 크기나 사양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난간 구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면, 배면, 측면, 코어에 대한 줄눈 계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및 지하주차장, 지하구조물은 관계기관의 요청 등에 따라 인·허가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시행 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 및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을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입주 후 주민자치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주차장의 사용에 대한 현재 주차계획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주차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사 중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장애인 램프 등의 배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수 배수시설, 저수조, 빗물저수조, 기전실 등 입주 후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설비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옥상층 오배수 벤트로 인해 주변의 일부 세대에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여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지붕층에 면한 일부 세대는 지붕층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인의 점검동선을 확보해 주어야 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의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재 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평면 계획상 부득이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시 창호 종류, 높이, 컬러 등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 시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도어는 실외기 간섭에 의해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진능력은 MMI이며 진도등급은 Ⅶ(0.133 이상 0.264 미만) - 0.2180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비확장 세대가 발생할 경우 비확장 세대에 단열재 및 조적벽체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욕조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본 공사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도서관, 주민복지시설, 화장실),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11 기타사항

■ **지하주차장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0m	2.7m	2.7m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 분		적용 여부	비 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 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건축비 가산비용을 인정받은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규정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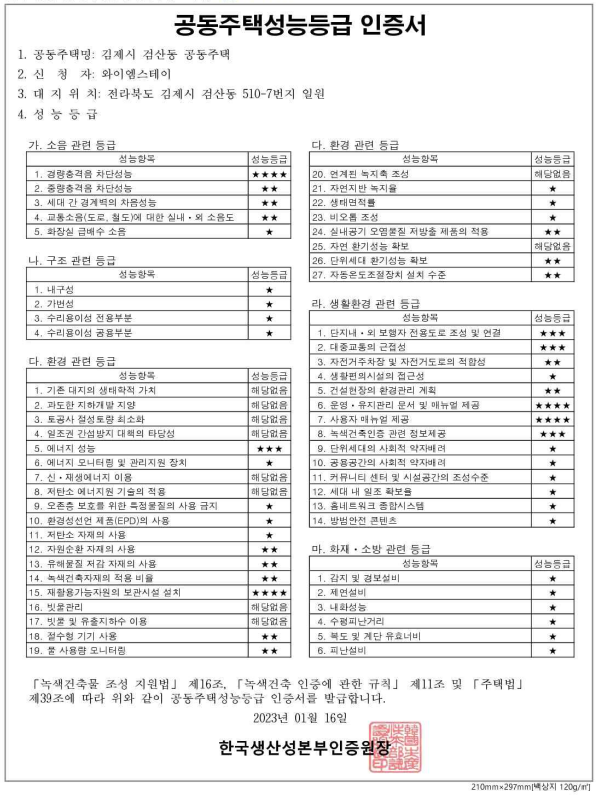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김제시 검산동 공동주택
2. 신 청 자: 와이엔스테이
3. 대 지 위 치: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10-7번지 일원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 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파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 · 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해당없음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 · 외 보행자 진출동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 · 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 · 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3년 01월 16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백상지 12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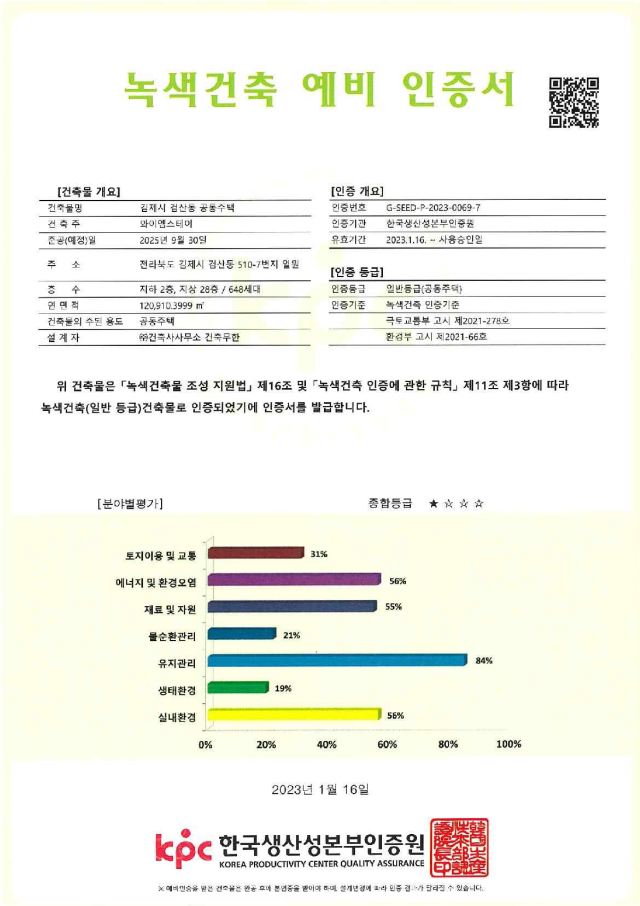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김제시 검산동 공동주택
건 축 주	와이엔스테이에
준공(예정)일	2025년 9월 30일
주 소	전라북도 김제시 검산동 510-7번지 일원
층 수	지하 2층, 지상 28층 / 648세대
연 면 적	120,910.3999 ㎡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 계 자	㈜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3-0069-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3.1.16.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일반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78호
	환경부 고시 제2021-66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2023년 1월 16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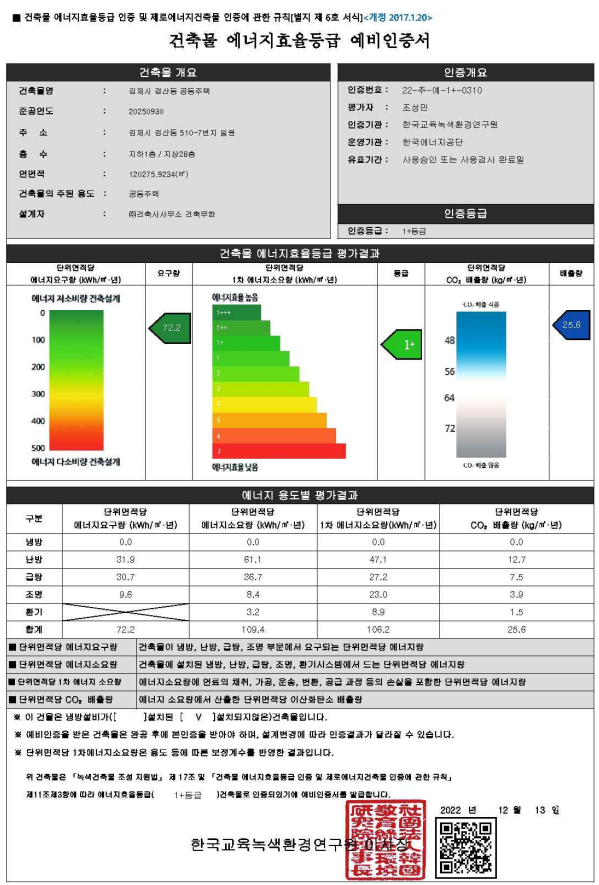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김제시 검산동 공동주택	인증번호	22-주-예-1+-0310
준공연도	20250930	평가자	조성민
주 소	김제시 검산동 510-7번지 일원	인증기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층 수	지하1층 / 지상28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120275.9234(㎡)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설계 / 에너지 다소비량 건축설계	72.2	에너지효율높음 / 에너지효율낮음	1+	CO_2 배출 적음 / CO_2 배출 많음	25.6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1.9	61.1	47.1	12.7
급탕	30.7	36.7	27.2	7.5
조명	9.6	8.4	23.0	3.9
환기		3.2	8.9	1.5
합계	72.2	109.4	106.2	25.6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됨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 년 12 월 13 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이사장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원)	비 고
건 축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1,872,558,600	부가세 포함
전 기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 478,501,000	
소 방	㈜건일엠이씨	₩ 703,201,950	
통 신	주식회사 건창기술단	₩ 112,200,000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김제 검산 예다음 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이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4-101-0004000호	**₩ 180,798,450,000 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장 제1조)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1장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 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2장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별도계약품목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시행자 및 시공사 현황

구 분	사업주체 (시행사)	시공사	비 고
법인명	와이엠스테이	주식회사 더와이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1908호(역삼동, 아남타워빌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47번길 7, 303호(농성동)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811-33-01014	170111-0677552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 고
063)547-3300	김제 검산 예다음 견본주택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검산동 505-2)	http://www.김제검산예다음.com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김제 검산 예다음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